

제364회국회  
(정기회)

#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11월22일(목)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물산업육성법안
2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수도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수도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저영향개발을 통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5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7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8.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7.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8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2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3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4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4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6.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
1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5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6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6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6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9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91. 동일임금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  
 19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15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다. 기상청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15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15
가. 환경부 소관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 · 이찬열 · 이동섭 · 윤영일 · 장정숙 · 박명재 · 홍문표 · 설훈 · 유성엽 · 장병완 의원 발의) .....	20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학영 · 김해영 · 박재호 · 안호영 · 전재수 · 윤준호 · 박광온 · 권칠승 · 백혜련 · 김상희 · 우원식 의원 발의) .....	20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장병완 · 조배숙 · 김중희 · 김삼화 · 신용현 · 정동영 · 원유철 · 이찬열 · 윤준호 의원 발의) .....	20
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 · 홍영표 · 박정 · 심재권 · 문희상 · 윤후덕 · 권칠승 · 안호영 · 신창현 · 송옥주 · 안규백 의원 발의) .....	20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김성원 · 함진규 · 윤영일 · 곽상도 · 장석춘 · 성일종 · 송희경 · 홍문종 · 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29) .....	20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함진규 · 홍문종 · 윤종필 · 장석춘 · 문진국 · 조훈현 · 원유철 · 정갑윤 · 김정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62) .....	20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이찬열 · 김수민 · 박선숙 · 오세정 · 신용현 · 하태경 · 손금주 · 채이배 · 유의동 · 김중희 · 이태규 의원 발의) .....	20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 · 곽대훈 · 권칠승 · 박성중 · 박덕흠 · 이진복 · 문진국 · 이완영 · 조경태 · 金成泰 의원 발의) .....	20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훈식 · 권미혁 · 김성수 · 박재호 · 신창현 · 윤후덕 · 이용득 · 이찬열 · 이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32) .....	20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 · 송희경 · 주호영 · 추경호 · 홍철호 · 김용태 · 엄용수 · 원유철 · 김성찬 · 최연혜 · 유민봉 의원 발의) .....	20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김경협 · 김동철 · 민병두 · 민홍철 · 박찬대 · 신창현 · 윤후덕 · 이상현 · 전현희 · 전해숙 · 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51) .....	20
1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 · 김종태 · 이철규 · 윤영석 · 이근현 · 박맹우 · 장석춘 · 이철우 · 이은권 · 곽대훈 · 홍철호 · 강석호 · 이우현 · 주승용 · 송기현 · 강석진 의원 발의) .....	20
1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 · 김정재 · 김석기 · 곽대훈 · 김종태 · 박인숙 · 윤재옥 · 이종명 · 박순자 · 이혜훈 · 김규환 의원 발의) .....	20
1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 · 이채익 · 강효상 · 박인숙 · 박순자 · 권석창 · 박덕흠 · 신보라 · 이은재 · 김무성 의원 발의) .....	20
1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희 의원 대표발의)(김중희 · 황주홍 · 이찬열 ·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 박주현 · 조배숙 · 장병완 · 김광수 의원 발의) .....	21
2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 · 곽대훈 · 경대수 · 김상훈 · 김석기 · 문진국 · 박명재 · 박완수 · 박인숙 · 이정현 · 이종배 · 이철규 · 홍철호 의원 발의) .....	21
2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문진국 · 김한표 · 함진규 · 이명수 · 윤영일 · 원유철 · 곽상도 · 장석춘 · 성일종 의원 발의) .....	21
22.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김수민 · 천정배 · 최경환(평) · 박지원 · 박주선 · 김경진 · 김삼화 · 송갑석 · 장병완 · 권은희 의원 발의) .....	21
23.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이용호 · 이동섭 · 이개호 · 이언주 · 신용현 · 김수민 · 이찬열 · 김삼화 · 강창일 · 이학재 · 손금주 · 김경진 · 윤영일 · 박주선 · 최도자 · 김동철 · 곽대훈 · 정인화 · 노웅래 의원 발의) .....	21

24. 물산업육성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 · 윤상직 · 김선동 · 金成泰 · 이종명 · 김순례 · 김종석 · 이균현 · 정진석 · 권석창 · 장제원 · 박순자 · 이만희 의원 발의) ..... 21
2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 · 홍영표 · 박정 · 심재권 · 문희상 · 윤후덕 · 권칠승 · 안호영 · 신창현 · 송옥주 · 안규백 의원 발의) ..... 21
2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박인숙 · 이정현 · 성일중 · 강석진 · 경대수 · 함진규 · 김기선 · 김명연 · 최연혜 의원 발의) ..... 21
2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훈식 · 권미혁 · 김성수 · 박재호 · 신창현 · 윤후덕 · 이용득 · 이찬열 · 이훈 의원 발의) ..... 21
2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 · 원유철 · 임이자 · 장석춘 · 정갑윤 · 김현아 · 신보라 · 김용태 · 경대수 · 이종명 · 이정현 · 송희경 의원 발의) ..... 21
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장석춘 · 원유철 · 윤종필 · 김성찬 · 문진국 · 김성원 · 이명수 · 함진규 · 윤영일 의원 발의) ..... 21
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이학재 · 김경진 · 이동섭 · 이혜훈 · 김중회 · 최도자 · 이찬열 · 송옥주 · 이연주 · 이용호 의원 발의) ..... 21
31.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 · 홍영표 · 박정 · 심재권 · 문희상 · 윤후덕 · 권칠승 · 안호영 · 신창현 · 송옥주 · 안규백 의원 발의) ..... 21
3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 · 권칠승 · 윤영일 · 장정숙 · 박영선 · 박주현 · 문진국 · 조배숙 · 유승희 · 송옥주 의원 발의) ..... 21
33.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권미혁 · 조정식 · 신경민 · 신창현 · 진선미 · 고용진 · 김병기 · 유승희 · 송옥주 의원 발의) ..... 21
34.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 · 박덕흠 · 김성원 · 홍문종 · 위성곤 · 함진규 · 유기준 · 김명연 · 안상수 · 신보라 · 강석진 의원 발의) ..... 21
35.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 · 김중회 · 정춘숙 · 기동민 · 안호영 · 김철민 · 윤후덕 · 임종성 · 최인호 · 민홍철 의원 발의) ..... 21
3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홍문종 · 윤종필 · 장석춘 · 문진국 · 함진규 · 김삼화 · 심재철 · 원유철 · 안상수 의원 발의) ..... 21
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박명재 · 이철규 · 추경호 · 강석진 · 이종배 · 정유섭 · 송희경 · 홍일표 · 강길부 · 하태경 · 이완영 의원 발의) ..... 21
3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훈식 · 권미혁 · 김성수 · 박재호 · 신창현 · 윤후덕 · 이용득 · 이찬열 · 이훈 의원 발의) ..... 21
3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추경호 · 정유섭 · 김태흠 · 김진태 · 김규환 · 김기선 · 성일중 · 강길부 · 김재원 의원 발의) ..... 22
4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 · 박정 · 정재호 · 서영교 · 윤후덕 · 이용득 · 김병기 · 전해철 · 서삼석 · 김종민 · 박완주 · 신창현 · 김철민 · 임종성 · 박재호 · 노웅래 의원 발의) ..... 22
4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 · 주광덕 · 윤종필 · 경대수 · 이종명 · 박성중 · 김석기 · 이명수 · 박덕흠 · 원유철 의원 발의) ..... 22
4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 · 김중회 · 박재호 · 백재현 · 조승래 · 강병원 · 김병욱 · 이용호 · 박홍근 · 윤후덕 · 권미혁 의원 발의) ..... 22
4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함진규 · 윤영일 · 金成泰 · 원유철 · 김성찬 · 곽상도 · 장석춘 · 김한표 · 이철규 의원 발의) ..... 22
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김영호 · 이찬열 · 문진국 · 송옥주 · 안규백 · 한정애 · 금태섭 · 박홍근 · 김상희 의원 발의) ..... 22
4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 · 이종명 ·

박덕흠 · 정인화 · 추경호 · 조경태 · 심재철 · 김석기 · 박명우 · 주광덕 · 염동열 · 이근현 · 김정재 의  
원 발의) ..... 22

4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회 의원 대표발의)(김중회 · 황주홍 ·  
이찬열 ·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 박주현 · 조배숙 · 장병완 · 이용호 의원 발의) ..... 22

4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 · 소병훈 · 윤후덕 · 김경협 · 이춘석 · 유  
동수 · 손혜원 · 심기준 · 민홍철 · 김영호 · 오제세 의원 발의) ..... 22

4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회 의원 대표발의)(김중회 · 황주홍 · 이찬열 · 유성엽 · 윤영일 · 김  
수민 · 박주현 · 조배숙 · 장병완 · 김광수 의원 발의) ..... 22

49.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김성원 · 주광덕 · 金成泰 · 김정재  
· 송희경 · 성일종 · 이양수 · 장석춘 · 이명수 의원 발의) ..... 22

50.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경태 · 이용호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김중회 의원 발의) ..... 22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 · 안규백 · 신창  
현 · 기동민 · 윤후덕 · 이철희 · 유동수 · 김현권 · 변재일 · 박경미 의원 발의) ..... 22

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 · 박선숙 · 김중  
로 · 하태경 · 채이배 · 이동섭 · 김삼화 · 김수민 · 오세정 · 이학재 의원 발의) ..... 22

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 · 심기준 · 전현  
희 · 송옥주 · 조정식 · 김병기 · 신창현 · 한정애 · 김영호 · 설훈 의원 발의) ..... 22

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이동  
섭 · 김수민 · 유성엽 · 위성곤 · 윤후덕 · 채이배 · 권칠승 · 조배숙 의원 발의) ..... 22

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학영 · 김해영  
· 박재호 · 안호영 · 전재수 · 윤준호 · 박광온 · 권칠승 · 백혜련 · 김상희 · 우원식 의원 발의) ..... 22

5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김성원 · 장석  
춘 · 원유철 · 윤종필 · 문진국 · 김성찬 · 함진규 · 정갑윤 · 윤영일 의원 발의) ..... 22

5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김경협 · 김동  
철 · 민병두 · 민홍철 · 박찬대 · 신창현 · 윤후덕 · 전현희 · 전해숙 · 정춘숙 의원 발의) ..... 22

58. 저영향개발을 통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 · 안호영 · 임종성  
· 조승래 · 윤후덕 · 박영선 · 강병원 · 양승조 · 백재현 · 조정식 의원 발의) ..... 22

59.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김  
경협 · 노웅래 · 민병두 · 송기현 · 신창현 · 안규백 · 윤후덕 · 이정미 · 이찬열 의원 발의) ..... 23

60.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  
학영 · 김해영 · 박재호 · 안호영 · 전재수 · 윤준호 · 박광온 · 권칠승 · 백혜련 · 김상희 · 우원식 의원  
발의) ..... 23

61.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회 의원 대표발의)(김중회 · 윤  
영일 · 권칠승 · 유성엽 · 김경진 · 이용호 · 김광수 · 손금주 · 장병완 · 김수민 의원 발의) ..... 23

6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 · 이동섭 · 김상희 · 김철민 · 김정우 · 정인  
화 · 김영호 · 전해숙 · 박남춘 · 윤관석 · 신창현 · 안규백 · 노웅래 의원 발의) ..... 23

6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 · 이찬열 · 박정 · 고용진  
· 황주홍 · 황희 · 이춘석 · 신창현 · 이수혁 · 신경민 · 위성곤 의원 발의) ..... 23

6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김광수 · 이찬열 · 장정숙 · 윤영일 ·  
김경진 · 정인화 · 정동영 · 장병완 · 박주민 의원 발의) ..... 23

6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학영 · 김해영 · 박재호 · 안호영 ·  
전재수 · 윤준호 · 박광온 · 권칠승 · 백혜련 · 김상희 · 우원식 의원 발의) ..... 23

6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 · 김승희 · 유기준 · 황영철 · 이종명 ·



성일중 · 심재철 · 경대수 · 최교일 · 박덕흠 · 박명재 의원 발의) ..... 23

6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고용진 · 조정식 · 신창현 · 이용호 · 이학영 · 윤호중 · 윤관석 · 윤영일 · 이용득 의원 발의) ..... 23

6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 · 김광수 · 김종희 · 박주현 · 신용현 · 유동수 · 이용호 · 이찬열 · 장정숙 · 정인화 의원 발의) ..... 23

6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김정협 · 김동철 · 민병두 · 민홍철 · 박찬대 · 신창현 · 윤후덕 · 이상현 · 전해숙 · 정춘숙 의원 발의) ..... 23

7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 · 광상도 · 김성원 · 송언석 · 최연혜 · 정유섭 · 임이자 · 백승주 · 조경태 · 전희경 의원 발의) ..... 23

7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 · 광상도 · 김성원 · 송언석 · 최연혜 · 정유섭 · 임이자 · 백승주 · 조경태 · 전희경 의원 발의) ..... 23

7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이찬열 · 김수민 · 윤영일 · 이용호 · 김관영 · 이개호 · 강창일 · 최도자 · 이동섭 · 김삼화 의원 발의) ..... 23

7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 · 윤관석 · 김태년 · 최인호 · 안호영 · 김현권 · 서형수 · 김해영 · 김병기 · 권칠승 의원 발의) ..... 23

7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김기선 · 이현승 · 김종석 · 김성원 · 엄용수 · 광대훈 · 백승주 · 경대수 · 정갑윤 · 이은재 · 김한표 의원 발의) ..... 23

7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 · 임종성 · 노웅래 · 안호영 · 윤후덕 · 안규백 · 남인순 · 송옥주 · 김영진 · 강병원 의원 발의) ..... 23

7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병기 · 신경민 · 진선미 · 김성수 · 윤후덕 · 심재권 · 고용진 · 유승희 · 송옥주 의원 발의) ..... 23

7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김종희 · 황주홍 · 이찬열 ·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 박주현 · 조배숙 · 장병완 · 김광수 의원 발의) ..... 23

78.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김상희 · 이인영 · 송갑석 · 김영진 · 유은혜 · 기동민 · 이규희 · 신경민 · 윤소하 · 오영훈 · 소병훈 · 윤관석 의원 발의) ..... 23

7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 · 심재권 · 박정 · 이훈 · 노웅래 · 안민석 · 이개호 · 임종성 · 김현권 · 안호영 · 위성근 · 최운열 의원 발의) ..... 24

8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김종희 · 황주홍 · 이찬열 ·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 박주현 · 조배숙 · 장병완 · 이용호 의원 발의) ..... 24

8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훈식 · 권칠승 · 김성수 · 김현권 · 남인순 · 박경미 · 유동수 · 전재수 · 채윤경 의원 발의) ..... 24

8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이찬열 · 김수민 · 박선숙 · 오세정 · 신용현 · 하태경 · 손금주 · 채이배 · 유의동 · 김종희 의원 발의) ..... 24

8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송갑석 · 김해영 · 전현희 · 권칠승 · 최인호 · 이학영 · 윤관석 · 정재호 · 이춘석 의원 발의) ..... 24

8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학영 · 김해영 · 박재호 · 안호영 · 전재수 · 윤준호 · 박광온 · 권칠승 · 백혜련 · 김상희 · 우원식 의원 발의) ..... 24

8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근 의원 대표발의)(위성근 · 추혜선 · 김철민 · 고용진 · 황주홍 · 이찬열 · 천정배 · 소병훈 · 유동수 · 신창현 의원 발의) ..... 24

8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 · 이철규 · 송희경 · 정중섭 · 조훈현 · 이진복 · 유재중 · 강석호 · 추경호 · 광대훈 · 박완수 · 강효상 · 김진태 의원 발의) ..... 24

87.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김민기 · 김병기 · 전해숙 · 강훈식 · 백혜련 · 인재근 · 이인영 · 서영교 · 금태섭 의원 발의) ..... 24

8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 · 윤관석 · 윤후덕 · 권칠승 · 박정 · 신창

현 · 강훈식 · 안규백 · 송갑석 · 윤호중 의원 발의)	24
8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 · 김규환 · 정갑윤 · 민경욱 · 이종명 · 경대수 · 추경호 · 나경원 · 이만희 · 정운천 의원 발의)	24
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기동민 · 정춘숙 · 한정애 · 김태년 · 윤소하 · 전해숙 · 김해영 · 제윤경 · 송옥주 · 김경협 · 송갑석 · 이용득 · 김병기 의원 발의)	24
9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신용현 · 권칠승 · 김현권 · 강훈식 · 이수혁 · 윤영일 · 전현희 · 노웅래 · 이찬열 의원 발의)	24
9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신용현 · 이찬열 · 김중로 · 최도자 · 채이배 · 김관영 · 이동섭 · 유의동 · 김중희 의원 발의)	24
9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노웅래 · 손혜원 · 유은혜 · 송갑석 · 김병기 · 김철민 · 강창일 · 서삼석 · 고용진 의원 발의)	24
9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 · 김규환 · 이명수 · 김성찬 · 윤한홍 · 박완수 · 김명연 · 민경욱 · 이용호 · 송희경 · 박명재 · 김도읍 의원 발의)	24
9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신용현 · 권칠승 · 김현권 · 강훈식 · 이수혁 · 윤영일 · 전현희 · 노웅래 · 이찬열 의원 발의)	24
9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김병기 · 노웅래 · 손혜원 · 유은혜 · 송갑석 · 김철민 · 강창일 · 서삼석 · 고용진 의원 발의)	24
9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강훈식 · 김경협 · 김상희 · 김태년 · 김해영 · 박찬대 · 서형수 · 소병훈 · 송옥주 · 이수혁 · 이용득 의원 발의)	24
9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신용현 · 권칠승 · 김현권 · 강훈식 · 이수혁 · 윤영일 · 전현희 · 노웅래 · 이찬열 의원 발의)	24
9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 · 전해철 · 김정우 · 김병기 · 손금주 · 서영교 · 박찬대 · 원혜영 · 정춘숙 · 고용진 · 박주민 · 우원식 의원 발의)	25
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강훈식 · 김경협 · 김상희 · 김성수 · 김영진 · 김종민 · 김태년 · 박광온 · 박재호 · 서형수 · 이수혁 · 진선미 · 최운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19)	25
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 · 이채익 · 김상훈 · 김선동 · 조경태 · 박덕흠 · 박명재 · 송희경 · 정종섭 · 김광림 · 이종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49)	25
1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 · 곽대훈 · 송언석 · 김선동 · 김광림 · 정갑윤 · 조경태 · 이종명 · 박명재 · 주호영 · 김정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84)	25
1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고용진 · 권미혁 · 김철민 · 박주민 · 송옥주 · 신창현 · 윤후덕 · 진선미 · 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89)	25
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송갑석 · 김해영 · 전현희 · 권칠승 · 최인호 · 이학영 · 윤관석 · 정재호 · 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33)	25
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송갑석 · 김해영 · 전현희 · 권칠승 · 최인호 · 이학영 · 윤관석 · 정재호 · 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59)	25
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이찬열 · 이태규 · 정태욱 · 김관영 · 최도자 · 신용현 · 김수민 · 오신환 · 이언주 · 송석준 · 이정현 · 강효상 · 이철규 의원 발의)	25
1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 · 박인숙 · 김명연 · 김현아 · 성일종 · 김태흠 · 이종배 · 함진규 · 원유철 · 정갑윤 · 정병국 의원 발의)	25
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신용현 · 권칠승 · 김현권 · 강훈식 · 이수혁 · 윤영일 · 전현희 · 노웅래 · 이찬열 의원 발의)	25
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 · 김선동 · 박덕흠 · 김석기 · 추경호 · 김성원 · 심재철 · 송언석 · 김재원 · 정양석 의원 발의)	25
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홍문표 · 이양수 · 정태욱 · 홍일표 · 박	

- 맹우·이종배·정우택·유성엽·최교일·이채익·강석호·정유섭·이학재 의원 발의) ..... 25
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중로·신용현·오세정·이찬열·김삼화·이동섭·최경환(평)·이언주·김종희 의원 발의) ..... 25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권칠승·위성곤·신용현·김중로·김삼화·이동섭·김철민·김동철·하태경 의원 발의) ..... 25
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김성찬·성일종·송언석·김진태·이은재·최교일·정갑윤·정용기·윤상직·강석진·박덕흠·김승희 의원 발의) ..... 25
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김광림·김정재·박명재·김선동·이종배·김상훈·정갑윤·송언석·강석호·김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00) ..... 25
1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김석기·박인숙·김정재·김광림·권성동·곽대훈·주호영·김선동·추경호·성일종·송희경 의원 발의) ..... 25
1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김종희·황주홍·이찬열·유성엽·윤영일·김수민·박주현·조배숙·장병완·김광수 의원 발의) ..... 25
1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원유철·김명연·김영우·권성동·곽대훈·金成泰·윤영석·이진복·정유섭 의원 발의) ..... 25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윤영일·김종희·정인화·이용주·김경진·조배숙·박지원·장정숙·최경환(평) 의원 발의) ..... 25
11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신용현·이찬열·김수민·김중로·채이배·김관영·이동섭·최도자·김종희·박선숙 의원 발의) ..... 26
12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송갑석·김성수·박찬대·신경민·김경협·진선미·안호영·유동수·이수혁·윤후덕·이정미 의원 발의) ..... 26
1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황주홍·이용주·정인화·윤영일·김종희·장정숙·박주현·김경진·조배숙·박지원·유성엽·김광수·윤소하 의원 발의) ..... 26
1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종희·이찬열·위성곤·권칠승·조배숙·이학재·천정배·유성엽·윤영일 의원 발의) ..... 26
12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찬열·오세정·신용현·김중로·채이배·김관영·이동섭·이태규·박선숙 의원 발의) ..... 26
12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박광운·송갑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이춘석 의원 발의) ..... 26
1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최도자·이동섭·김수민·유성엽·위성곤·윤후덕·채이배·권칠승 의원 발의) ..... 26
1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찬열·오세정·신용현·채이배·이혜훈·김성식·김중로·정운천·주승용·김종희·이동섭 의원 발의) ..... 26
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김정재·정갑윤·장석춘·홍문중·문진국·정유섭·윤영일·김성원·김명연 의원 발의) ..... 26
1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박주현·전혜숙·정인화·천정배·김광수·이정미·장병완·노웅래·신용현·황주홍·김종희·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77) ..... 26
1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박덕흠·원유철·이명수·최연혜·성일종·임이자·김석기·김경진·신보라 의원 발의) ..... 26
1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기동민·정춘숙·한정애·김태년·윤소하·전혜숙·김해영·제윤경·송옥주·김경협·송갑석·이용득·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627) ..... 26
1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기동

- 민 · 정춘숙 · 한정애 · 김태년 · 윤소하 · 전해숙 · 김해영 · 제윤경 · 송옥주 · 김경협 · 송갑석 · 이용득 · 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637) ..... 26
1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 · 김진표 · 이인영 · 박범계 · 한정애 · 강병원 · 김성수 · 신창현 · 이재정 · 이훈 · 정춘숙 · 제윤경 의원 발의) ... 26
1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정갑윤 · 홍문표 · 송희경 · 이종명 · 박명재 · 김선동 · 윤종필 · 이양수 · 박덕흠 의원 발의) ..... 26
1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 · 김경진 · 박선숙 · 김광수 · 윤일규 · 윤관석 · 전해숙 · 유성엽 · 윤영일 · 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32) ..... 26
1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 · 김병기 · 조승래 · 김민기 · 박찬대 · 서영교 · 안민석 · 정춘숙 · 홍익표 · 이규희 · 김영호 · 고용진 · 원혜영 · 인재근 의원 발의) ..... 26
1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 · 김관영 · 정춘숙 · 홍의락 · 고용진 · 김철민 · 조배숙 · 윤후덕 · 윤관석 · 이원욱 · 김경협 의원 발의) ... 26
1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 · 김해영 · 김종대 · 김수민 · 심상정 · 윤소하 · 이채익 · 이상헌 · 추혜선 · 강길부 · 이정미 의원 발의) .... 27
13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훈식 · 권칠승 · 김성수 · 김현권 · 남인순 · 박경미 · 유동수 · 전재수 · 제윤경 의원 발의) ..... 27
13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이동섭 · 김중회 · 윤소하 · 조배숙 · 박선숙 · 정성호 · 김중로 · 김삼화 · 김경진 · 천정배 의원 발의) ..... 27
1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최도자 · 이동섭 · 김수민 · 유성엽 · 위성곤 · 윤후덕 · 채이배 · 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53) ..... 27
1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 · 이동섭 · 권은희 · 이찬열 · 엄용수 · 이언주 · 김중로 · 홍철호 · 조정식 · 신상진 의원 발의) ..... 27
1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송갑석 · 김성수 · 고용진 · 박찬대 · 김병기 · 신경민 · 김경협 · 진선미 · 안호영 · 유동수 · 이수혁 · 유승희 · 윤후덕 · 이정미 의원 발의) ..... 27
1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최도자 · 이동섭 · 김수민 · 유성엽 · 위성곤 · 윤후덕 · 권칠승 · 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02) ..... 27
1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박광운 · 송갑석 · 김해영 · 전현희 · 권칠승 · 최인호 · 이학영 · 윤관석 · 정재호 · 이춘석 의원 발의) ..... 27
1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 · 문진국 · 정양석 · 이철규 · 송기현 · 박덕흠 · 황영철 · 위성곤 · 전재수 · 주호영 · 경대수 의원 발의) ..... 27
1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 · 홍일표 · 윤영석 · 유재중 · 곽대훈 · 김석기 · 이채익 · 권성동 · 함진규 · 추경호 의원 발의) ..... 27
1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 · 김종대 · 추혜선 · 심상정 · 윤소하 · 송옥주 · 박주현 · 민홍철 · 김종훈 · 박찬대 의원 발의) ..... 27
14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 · 유성엽 · 주승용 · 박주현 · 이찬열 · 김수민 · 김광수 · 장정숙 · 박주민 · 김중회 의원 발의) ..... 27
14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 · 박명재 · 민경욱 · 박완수 · 곽대훈 · 임이자 · 이은권 · 정갑윤 · 김석기 · 박대출 · 곽상도 의원 발의) ..... 27
1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 · 황주홍 · 윤영일 · 신용현 · 김광수 · 장정숙 · 이정미 · 김상희 · 손금주 · 천정배 · 박주민 · 장병완 · 김경진 의원 발의) ..... 27
1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위성곤 · 이찬열 · 권칠승 · 이학재 · 조배숙 · 천정배 · 윤영일 · 김중회 · 유성엽 의원 발의) ..... 27
1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 · 민병두 · 전해숙 · 이춘석 · 백

- 혜련·박광온·김상희·김정우·이철희·박선숙 의원 발의) ..... 27
1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정춘숙·송기현·최인호·박정·권칠승·전재수·우원식·김혜영·유동수·황희·유은혜·위성곤·강병원·김병관 의원 발의) ..... 27
1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창일·고용진·금태섭·김병기·김성수·김정우·남인순·박주민·박찬대·서영교·송옥주·이후삼·추미애·윤관석 의원 발의) ..... 27
15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추경호·박덕흠·경대수·김광림·김태흠·박명재·조경태·이현재·강길부·강석진 의원 발의) ..... 27
156.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신보라·박인숙·김무성·이은권·성일종·김태흠·추경호·박순자·민경욱·강석진·김정재·김광림·정갑윤·김승희·김성원·김세연·임이자·원유철·문진국·김석기 의원 발의) ..... 27
1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신용현·권칠승·김현권·강훈식·이수혁·윤영일·전현희·노웅래·이찬열 의원 발의) ..... 28
1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주광덕·임이자·윤한홍·장석춘·민경욱·이동섭·김현아·조원진·신보라 의원 발의) ..... 28
15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학영·김혜영·박재호·안호영·전재수·윤준호·박광온·권칠승·백혜련·김상희·우원식 의원 발의) ..... 28
16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신용현·권칠승·김현권·강훈식·이수혁·윤영일·전현희·노웅래·이찬열 의원 발의) ..... 28
16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박주선·정성호·김광수·이연주·신용현·오신환·김수민·채이배·최도자 의원 발의) ..... 28
16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정인화·천정배·이용호·박주현·장정숙·유성엽·성일종·조배숙·손금주·김광수·김중로 의원 발의) ..... 28
16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병기·김영호·김종민·김철민·노웅래·이규희·이재정·윤준호·송옥주·조승래 의원 발의) ..... 28
16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송희경·조훈현·장석춘·김학용·박명재·백승주·김성원·민경욱·주광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48) ..... 28
16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송희경·조훈현·장석춘·김학용·박명재·백승주·김성원·민경욱·주광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66) ..... 28
16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이채익·김진태·윤종필·임이자·강석호·이학재·송희경·김정재·정병국·조훈현·김성찬·박명재 의원 발의) ..... 28
16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유성엽·김종희·천정배·조배숙·이찬열·최경환(평)·장정숙·황주홍·이용주 의원 발의) ..... 28
16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이수혁·박정·안호영·문희상·김병기·이찬열·표창원·김경협·이인영 의원 발의) ..... 28
16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박덕흠·김석기·곽대훈·원유철·이종배·송언석·박인숙·김상훈·최연혜 의원 발의) ..... 28
17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이채익·곽대훈·김상훈·김광림·박명재·김선동·강석호·조경태·엄용수·박성중 의원 발의) ..... 28
17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박맹우·윤한홍·백재현·정유섭·이종배·심재철·강효상·곽대훈·김규환·김기선·안상수·김학용 의원 발의) ..... 28
17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영호·유기준·박명재·강석호·민경욱·성일종·김승희·김순례·유재중 의원 발의) ..... 28
17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정현·이태규·정태욱·김관영·최도자·신용현·김수민·오신환·오세정·이찬열·이연주·송석준·강효상·이철규 의원 발의) ..... 28

17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 · 추경호 · 박덕흠 · 경대수 · 김광림 · 김태흠 · 박명재 · 조경태 · 이현재 · 강길부 · 강석진 의원 발의) ..... 28

17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김성원 · 김무성 · 정태옥 · 성일종 · 경대수 · 이은재 · 홍문표 · 김용태 · 이현재 · 정용기 의원 발의) ..... 28

17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 · 김광림 · 김선동 · 김순례 · 박성중 · 송희경 · 유재중 · 윤한홍 · 이종구 · 이종배 · 정유섭 의원 발의) ..... 28

17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 · 정병국 · 하태경 · 김중로 · 김관영 · 이동섭 · 김삼화 · 김수민 · 이찬열 · 김종석 · 정유섭 · 강효상 · 윤상직 · 추경호 의원 발의) ..... 28

17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 · 박인숙 · 김학용 · 김승희 · 엄용수 · 최교일 · 김성원 · 유재중 · 이균현 · 이진복 · 윤영석 의원 발의) ..... 29

17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송희경 · 함진규 · 이채익 · 박인숙 · 정유섭 · 김성태 · 김현아 · 김도읍 · 박덕흠 · 이종명 · 이은권 의원 발의) ..... 29

18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 · 이종배 · 주광덕 · 김진태 · 이현재 · 원유철 · 김기선 · 김태흠 · 정우택 · 윤영석 · 이현승 의원 발의) ..... 29

18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원유철 · 윤종필 · 장석춘 · 주광덕 · 정태옥 · 문진국 · 성일종 · 김성찬 · 김승희 의원 발의) ..... 29

18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 · 박영선 · 조배숙 · 김광수 · 문진국 · 유성엽 · 최경환(평) · 정인화 · 이혜훈 · 이종구 의원 발의) ..... 29

18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 · 김관영 · 채이배 · 이태규 · 최도자 · 김동철 · 이언주 · 주승용 · 신용현 · 박주선 · 이동섭 · 이학재 · 이찬열 · 김삼화 · 김성식 의원 발의) ..... 29

18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 · 주광덕 · 경대수 · 박성중 · 김석기 · 이종명 · 이명수 · 박덕흠 · 최연혜 · 김태흠 의원 발의) ..... 29

18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 · 이언주 · 추경호 · 정유섭 · 김종석 · 박대출 · 윤한홍 · 김규환 · 권성동 · 정종섭 의원 발의) ..... 29

18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 · 김석기 · 박인숙 · 김정재 · 김광림 · 권성동 · 곽대훈 · 주호영 · 김선동 · 추경호 · 성일종 의원 발의) ..... 29

18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희 의원 대표발의)(김중희 · 윤영일 · 정인화 · 유성엽 · 김광수 · 김수민 · 조배숙 · 박지원 · 이찬열 · 황주홍 의원 발의) ..... 29

18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 · 곽대훈 · 정유섭 · 김재원 · 정갑윤 · 박덕흠 · 정태옥 · 권성동 · 이채익 · 성일종 · 주광덕 의원 발의) ..... 29

18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김해영 · 김현권 · 백혜련 · 김영진 · 이춘석 · 안민석 · 전현희 · 권칠승 · 이학영 의원 발의) ..... 29

19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김해영 · 김현권 · 백혜련 · 김영진 · 이춘석 · 안민석 · 전현희 · 권칠승 · 이학영 의원 발의) ..... 29

191. 동일임금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신용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 ..... 29

19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29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17시13분 개의)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로 부득이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의와 의결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법정 예산안 처리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오늘 회의에서 예산안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의 불참 속에 불완전한 형태로 출범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범위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사정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이슈가 즐비한데다가 최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만 합니다. '함께 더 멀리'라는 경사노위 슬로건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기를 환경노동위원장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먼저 의결한 후 법안, 청원 및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17시15분)

○위원장 김학용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동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환경부와 기상청,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2018년 11월 13일, 14일, 19일 및 22일 네 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7491억 8800만 원을 증액하고 26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에서 2811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170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비 보급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4억 46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과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사업은 사업단 운영부실, 기획평가 관리비 과다 편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17억 원과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1326억 54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에 3017억 59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420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보 개방에 따른 어업 피해조사와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보 개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19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철 및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306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995억 3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95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방치폐기물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4124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6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 등 5개의 기금에서 2007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110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적기업 진흥원 운영사업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보아 창업팀 확대 규모를 조정하여 4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산재예방시설 용자 사업은 산재예방사업 재원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접지원 사업인 용자사업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1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은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관련된 역량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608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은 소규모 건설업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비계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장애인 직업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설 사업에 612억 800만 원과 부산시 발달장애인센터 신축 예산 44억 원, 수도권 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 신설 예산 39억 원 등 모두 695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으로의 전출금을 모성보호급여 총지출의 30% 수준까지 확대토록 하는 등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직업정보 제공 및 직업지도 등의 사업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존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의결하였음을 밝혀두며 이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에도 특이사항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11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7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APEC 기후센터의 경우 불요불급한 연구활동비와 인건비 일부 6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천리안위성 발사 지연으로 탑재체 보험료 1개월분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해 먼바다 해양기상부이 3대 도입을 위하여 32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제2·제3 해양기상기지 조기 구축을 위하여 공사비 등 24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제주국제공항의 윈드시어 탐지 관측장비 확충 등을 위하여 3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약금 143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APEC기후센터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고 대대적인 쇄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김동철 소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용 이장우 위원님 그리고 이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예산안 중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사업비 대비 임차료가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예산절감할 필요도 있고 한편으로는 기상청이 있는 대전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전하는 것이 업무의 연계성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데 어쨌든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상청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서대문구 충정빌딩에 있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신속하게 이전시키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겠다, 그렇지요?

○**기상청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내년도 예산안에 소요예산 약 29억 정도……

○**기상청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29억……

○**이장우 위원**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그래서 한 29억 정도를 수정해서 반영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기상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기상청장 김종석** 저희들이 일회성 소요비용 약 31억 중에 절감되는 연간 지출액 2억을 제외하면 총 예산은 한 29억 정도 됩니다. 증액해 주시면 국회 국정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대로 조속하게 이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방이전에 꼭 필요한 예산 약 29억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환경부 예산 중에서 자연보전단체에 1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자연공원협회나 자연환경보전협회나 사실상 휴지기에 들어간 단체거든요. 사실상 활동도 없는데 증액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가, 자연보전단체 3억 8200을 4억 8200으로 1억 원 증액했는데 여기서 자연보전단체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장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정단체 지원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안이 1억 2000입니다. 그것들을 공모 주제를 다각화하고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억 원을 증액하도록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안입니다.

○**이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은 2017년에 국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나서 작년에는 27억 원을 깎았는데 지금 17억 원 겨우 깎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결과를 볼 것 같으면 1차년도 같은 것이 결과물도 굉장히 안 나오고 굉장히 난맥상으로 했는데 17억 겨우 깎아서 감액했

다고 볼 수 있어요? 나는 그것 한 100억 이상 깎아야 마땅한 것이지.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산업단 2개의 과제에 대해서 1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부안에서도 이미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도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곤란하고 지금 장관께서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나게 방만하게 해서 작년에 감액했다는 말이에요. 연구사업단장이 연봉 1억 5000을 받고서 턱도 없는 연구한다고 해서 몇 억 원씩 연구비 줘서 그것을 깎았는데 그리고 1차 몇 년도 과업 결과 보면 실용화된 것이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2차년도에 계속 탁상적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계획대로 다 하게 되면 7000억 원 세금을 쓰는 것인데 너무 방만하다고요.

그래서 이것 환경부에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어떤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 박천규** 위원님 제가……

○**이상돈 위원** 예.

○**환경부차관 박천규**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저희들 연초에 현재 글로벌탑사업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다시 하라고 그랬잖아요.

○**환경부차관 박천규** 예, 다시 들여다봐서 중단과제가 있으면 바로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선 반영해 놓고, 올해는 정부안에서 저희들이 벌써 한 47억 정도를 감액해서 왔는데 이번에 또 추가 감액된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1월 달 정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를 해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불필요한 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중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것을 과감하게 중단할 것은 중단해서 환경부의 생태원이나 생물자원관이나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한 판인데 쓸데없는 데 갖다가, 밖에다가 돈 퍼주는 것은 문제 많아요. 그것을 마지막까지 한번 챙겨서 보다 유용하게 써야지 이것은 턱도 없는 데 돈 쓰는 거라고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저번에 저희가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

합니다.

○**김동철 위원** 기상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서해 먼바다 해양기상부이 3대를 더 추가해서 5대를 도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상청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사실은 호남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해양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항로 수도 그렇고 여객선 수도 그렇고 어항시설, 어업인, 어선 이런 것들이 전부 거의 한 절반 이상을 호남지역에서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남해 쪽의 해양기상정보, 특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기상청은 2019년도에 해양기상부이를 전부 서해 쪽만 우선적으로 먼저 한다는 말이지요.

○**기상청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남해 쪽은 특히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갈수록 기후온난화라든가 이상기온 등으로 태풍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남해 먼바다에 대한 해양기상부이 설치의 필요하지 않은가……

이번에도 태풍 솔릭의 경우만 해도 진로예측에 해양기상부이가 있었다라면 솔릭의 진로예측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청장 김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남해 태풍 올라올 때 남쪽 해양 부분에 관측장비가 필요합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해양관측부이 설치를 연도적으로 계획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일단 서해상 쪽에 3개를 더 합쳐서 5개를 만들었습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해양부이는 태풍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해양기지 건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 기재부하고 협정 중인데 지난번에 확인해 본 바는 이어도에 해양기지가 있어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김동철 위원** 다시 한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어도가 어쨌다고요?

○**기상청장 김종석** 이어도에 현재 해양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중첩되는 것이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중인데 만약 설치를 하게 되면 해양기지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해양기지가 해상부이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요?

○**기상청장 김종석** 예.

○**김동철 위원** 그런데 남해하고 동해에 일곱 군데 설치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기상청장 김종석** 현재 그 안은 해양부이를 내륙 가까운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해양기지도 설치하고 육지에 근접하게 해양부이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기상청장 김종석** 예, 가까운 쪽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민들 이런 부분에 현재 파고가 낮기 때문에 해양부이가 적합해서 해양부이를 검토하고 있고 먼 바다 쪽은 해양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태풍 건디는 것에 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검토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님, 증액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다음은 기상청장님, 증액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기상청장 김종석** 예, 부대의견 포함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정부 측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및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좀 전에 이장우 위원님이 요청하신 한국 기상산업기술원 이전 관련 29억 800만 원 증액까지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세 분 간사님들의 협의

를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위임받을 사안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대한 각 소관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동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이 향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이 국민

의 생활환경 개선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새로 임명된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으로 주대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금한승 환경경제정책관이 임명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자리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김동철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국가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일자리 사정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가며 충실이 집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김종석**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 활동기간 중에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동철 예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상청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

해 주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예보정확도 향상에 필요한 기상실황 감시, 관측 공백 해소, 예보관 전문성 등을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이전비용을 편성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노고해 주신 김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또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기상청장께서는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갖는 생각입니다만 나라 예산을 내 집 살림하듯이 하면 아마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부처의 전 공무원이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유용하게 잘 쓰이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 · 이찬열 · 이동섭 · 운영일 · 장정숙 · 박명재 · 홍문표 · 설훈 · 유성엽 · 장병완 의원 발의)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학영 · 김해영 · 박재호 · 안호영 · 전재수 · 윤준호 · 박광온 · 권칠승 · 백혜련 · 김상희 · 우원식 의원 발의)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장병완 · 조배숙 · 김종희 · 김삼화 · 신용현 · 정동영 · 원유철 · 이찬열 · 윤준호 의원 발의)
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

원 대표발의)(이수혁 · 홍영표 · 박정 · 심재권 · 문희상 · 윤후덕 · 권칠승 · 안호영 · 신창현 · 송옥주 · 안규백 의원 발의)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김성원 · 함진규 · 운영일 · 곽상도 · 장석춘 · 성일중 · 송희경 · 홍문중 · 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29)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함진규 · 홍문중 · 윤종필 · 장석춘 · 문진국 · 조훈현 · 원유철 · 정갑윤 · 김정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62)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이찬열 · 김수민 · 박선숙 · 오세정 · 신용현 · 하태경 · 손금주 · 채이배 · 유의동 · 김종희 · 이태규 의원 발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 · 곽대훈 · 권칠승 · 박성중 · 박덕흠 · 이진복 · 문진국 · 이완영 · 조경태 · 金成泰 의원 발의)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훈식 · 권미혁 · 김성수 · 박재호 · 신창현 · 윤후덕 · 이용득 · 이찬열 · 이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32)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 · 송희경 · 주호영 · 추경호 · 홍철호 · 김용태 · 엄용수 · 원유철 · 김성찬 · 최연혜 · 유민봉 의원 발의)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김경협 · 김동철 · 민병두 · 민홍철 · 박찬대 · 신창현 · 윤후덕 · 이상헌 · 전현희 · 전해숙 · 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51)
1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 · 김종태 · 이철규 · 운영석 · 이군현 · 박맹우 · 장석춘 · 이철우 · 이은권 · 곽대훈 · 홍철호 · 강석호 · 이우현 · 주승용 · 송기현 · 강석진 의원 발의)
1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 · 김정재 · 김석기 · 곽대훈 · 김종태 · 박인숙 · 윤재욱 · 이종명 · 박순자 · 이혜훈 · 김규환 의원 발의)
1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 ·

- 이채익·강효상·박인숙·박순자·권석창·박덕흠·신보라·이은재·김무성 의원 발의)
1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중회 의원 대표발의)(김중회·황주홍·이찬열·유성엽·윤영일·김수민·박주현·조배숙·장병완·김광수 의원 발의)
2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곽대훈·경대수·김상훈·김석기·문진국·박명재·박완수·박인숙·이정현·이종배·이철규·홍철호 의원 발의)
2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문진국·김한표·함진규·이명수·윤영일·원유철·곽상도·장석춘·성일종 의원 발의)
22.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김수민·천정배·최경환(평)·박지원·박주선·김경진·김삼화·송갑석·장병완·권은희 의원 발의)
23.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용호·이동섭·이개호·이연주·신용현·김수민·이찬열·김삼화·강창일·이학재·손금주·김경진·윤영일·박주선·최도자·김동철·곽대훈·정인화·노웅래 의원 발의)
24. **물산업육성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윤상직·김선동·金成泰·이종명·김순례·김종석·이군현·정진석·권석창·장제원·박순자·이만희 의원 발의)
2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홍영표·박정·심재권·문희상·윤후덕·권칠승·안호영·신창현·송옥주·안규백 의원 발의)
2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인숙·이정현·성일종·강석진·경대수·함진규·김기선·김명연·최연혜 의원 발의)
2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훈식·권미혁·김성수·박재호·신창현·윤후덕·이용득·이찬열·이훈 의원 발의)
2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원유철·임이자·장석춘·정갑윤·김현아·신보라·김용태·경대수·이종명·이정현·송희경 의원 발의)
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장석춘·원유철·윤종필·김성찬·문진국·김성원·이명수·함진규·윤영일 의원 발의)
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학재·김경진·이동섭·이혜훈·김중회·최도자·이찬열·송옥주·이연주·이용호 의원 발의)
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홍영표·박정·심재권·문희상·윤후덕·권칠승·안호영·신창현·송옥주·안규백 의원 발의)
3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권칠승·윤영일·장정숙·박영선·박주현·문진국·조배숙·유승희·송옥주 의원 발의)
3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권미혁·조정식·신경민·신창현·진선미·고용진·김병기·유승희·송옥주 의원 발의)
3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박덕흠·김성원·홍문종·위성곤·함진규·유기준·김명연·안상수·신보라·강석진 의원 발의)
3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김중회·정춘숙·기동민·안호영·김철민·윤후덕·임종성·최인호·민홍철 의원 발의)
3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홍문종·윤종필·장석춘·문진국·함진규·김삼화·심재철·원유철·안상수 의원 발의)
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박명재·이철규·추경호·강석진·이종배·정유섭·송희경·홍일표·강길부·하태경·이완영 의원 발의)
3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훈식·권미혁·

- 김성수 · 박재호 · 신창현 · 윤후덕 · 이용득 · 이찬열 · 이훈 의원 발의)
3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 · 추경호 · 정유섭 · 김태흠 · 김진태 · 김규환 · 김기선 · 성일중 · 강길부 · 김재원 의원 발의)
4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 · 박정 · 정재호 · 서영교 · 윤후덕 · 이용득 · 김병기 · 전해철 · 서삼석 · 김종민 · 박완주 · 신창현 · 김철민 · 임종성 · 박재호 · 노웅래 의원 발의)
4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 · 주광덕 · 윤종필 · 경대수 · 이종명 · 박성중 · 김석기 · 이명수 · 박덕흠 · 원유철 의원 발의)
4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 · 김중회 · 박재호 · 백재현 · 조승래 · 강병원 · 김병욱 · 이용호 · 박홍근 · 윤후덕 · 권미혁 의원 발의)
4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함진규 · 윤영일 · 金成泰 · 원유철 · 김성찬 · 곽상도 · 장석춘 · 김한표 · 이철규 의원 발의)
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 · 김영호 · 이찬열 · 문진국 · 송옥주 · 안규백 · 한정애 · 금태섭 · 박홍근 · 김상희 의원 발의)
4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 · 이종명 · 박덕흠 · 정인화 · 추경호 · 조경태 · 심재철 · 김석기 · 박맹우 · 주광덕 · 염동열 · 이군현 · 김정재 의원 발의)
4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회 의원 대표발의)(김중회 · 황주홍 · 이찬열 ·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 박주현 · 조배숙 · 장병완 · 이용호 의원 발의)
4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 · 소병훈 · 윤후덕 · 김경협 · 이춘석 · 유동수 · 손혜원 · 심기준 · 민홍철 · 김영호 · 오제세 의원 발의)
4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회 의원 대표발의)(김중회 · 황주홍 · 이찬열 ·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 박주현 · 조배숙 · 장병완 · 김광수 의원 발의)
49.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 · 김성원 · 주광덕 · 金成泰 · 김정재 · 송희경 · 성일중 · 이양수 · 장석춘 · 이명수 의원 발의)
50.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김수민 · 조경태 · 이용호 · 권칠승 · 이동섭 · 김철민 · 오제세 · 김중회 의원 발의)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 · 안규백 · 신창현 · 기동민 · 윤후덕 · 이철희 · 유동수 · 김현권 · 변재일 · 박경미 의원 발의)
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 · 박선숙 · 김중로 · 하태경 · 채이배 · 이동섭 · 김삼화 · 김수민 · 오세정 · 이학재 의원 발의)
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 · 심기준 · 전현희 · 송옥주 · 조정식 · 김병기 · 신창현 · 한정애 · 김영호 · 설훈 의원 발의)
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 · 황주홍 · 이동섭 · 김수민 · 유성엽 · 위성곤 · 윤후덕 · 채이배 · 권칠승 · 조배숙 의원 발의)
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학영 · 김해영 · 박재호 · 안호영 · 전재수 · 윤준호 · 박광운 · 권칠승 · 백혜련 · 김상희 · 우원식 의원 발의)
5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 · 김성원 · 장석춘 · 원유철 · 윤종필 · 문진국 · 김성찬 · 함진규 · 정갑윤 · 윤영일 의원 발의)
5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김경협 · 김동철 · 민병두 · 민홍철 · 박찬대 · 신창현 · 윤후덕 · 전현희 · 전해숙 · 정춘숙 의원 발의)
58. **저영향개발을 통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

- 식·안호영·임종성·조승래·윤후덕·박영선·강병원·양승조·백재현·조정식 의원 발의)
5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김경협·노웅래·민병두·송기현·신창현·안규백·윤후덕·이정미·이찬열 의원 발의)
6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학영·김해영·박재호·안호영·전재수·윤준호·박광온·권칠승·백혜련·김상희·우원식 의원 발의)
6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김종희·윤영일·권칠승·유성엽·김경진·이용호·김광수·손금주·장병완·김수민 의원 발의)
6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이동섭·김상희·김철민·김정우·정인화·김영호·전혜숙·박남춘·윤관석·신창현·안규백·노웅래 의원 발의)
63. **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이찬열·박정·고용진·황주홍·황희·이춘석·신창현·이수혁·신경민·위성곤 의원 발의)
6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광수·이찬열·장정숙·윤영일·김경진·정인화·정동영·장병완·박주민 의원 발의)
6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이학영·김해영·박재호·안호영·전재수·윤준호·박광온·권칠승·백혜련·김상희·우원식 의원 발의)
6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김승희·유기준·황영철·이종명·성일중·심재철·경대수·최교일·박덕흠·박명재 의원 발의)
6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고용진·조정식·신창현·이용호·이학영·윤희중·윤관석·윤영일·이용득 의원 발의)
6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광수·김종희·박주현·신용현·유동수·이용호·이찬열·장정숙·정인화 의원 발의)
6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김경협·김동철·민병두·민홍철·박찬대·신창현·윤후덕·이상현·전혜숙·정춘숙 의원 발의)
7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곽상도·김성원·송언석·최연혜·정유섭·임이자·백승주·조경태·전희경 의원 발의)
7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곽상도·김성원·송언석·최연혜·정유섭·임이자·백승주·조경태·전희경 의원 발의)
7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찬열·김수민·윤영일·이용호·김관영·이개호·장창일·최도자·이동섭·김삼화 의원 발의)
7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윤관석·김태년·최인호·안호영·김현권·서형수·김해영·김병기·권칠승 의원 발의)
7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기선·이현승·김종석·김성원·엄용수·곽대훈·백승주·경대수·정갑윤·이은재·김한표 의원 발의)
7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임종성·노웅래·안호영·윤후덕·안규백·남인순·송옥주·김영진·강병원 의원 발의)
7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병기·신경민·진선미·김성수·윤후덕·심재권·고용진·유승희·송옥주 의원 발의)
7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김종희·황주홍·이찬열·유성엽·윤영일·김수민·박주현·조배숙·장병완·김광수 의원 발의)
78.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김상희·이인영·송갑석·김영진·유은혜·기동민·이규희·신경민·윤소하·오영훈·소병훈·윤관석 의원 발의)

- 7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 · 심재권 · 박정 · 이훈 · 노용래 · 안민석 · 이개호 · 임종성 · 김현권 · 안호영 · 위성곤 · 최윤열 의원 발의)
- 8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희 의원 대표발의)(김중희 · 황주홍 · 이찬열 ·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 박주현 · 조배숙 · 장병완 · 이용호 의원 발의)
- 8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강훈식 · 권칠승 · 김성수 · 김현권 · 남인순 · 박경미 · 유동수 · 전재수 · 제윤경 의원 발의)
- 8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이찬열 · 김수민 · 박선숙 · 오세정 · 신용현 · 하태경 · 손금주 · 채이배 · 유의동 · 김중희 의원 발의)
- 8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 · 송갑석 · 김해영 · 전현희 · 권칠승 · 최인호 · 이학영 · 윤관석 · 정재호 · 이춘석 의원 발의)
- 8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학영 · 김해영 · 박재호 · 안호영 · 전재수 · 윤준호 · 박광온 · 권칠승 · 백혜련 · 김상희 · 우원식 의원 발의)
- 8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 · 추혜선 · 김철민 · 고용진 · 황주홍 · 이찬열 · 천정배 · 소병훈 · 유동수 · 신창현 의원 발의)
- 8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 · 이철규 · 송희경 · 정종섭 · 조훈현 · 이진복 · 유재중 · 강석호 · 추경호 · 광대훈 · 박완수 · 강효상 · 김진태 의원 발의)
- 87.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 김민기 · 김병기 · 전해숙 · 강훈식 · 백혜련 · 인재근 · 이인영 · 서영교 · 금태섭 의원 발의)
- 8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 · 윤관석 · 윤후덕 · 권칠승 · 박정 · 신창현 · 강훈식 · 안규백 · 송갑

- 석 · 윤호중 의원 발의)
- 8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 · 김규환 · 정갑윤 · 민경욱 · 이종명 · 경대수 · 추경호 · 나경원 · 이만희 · 정운천 의원 발의)
- 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기동민 · 정춘숙 · 한정애 · 김태년 · 윤소하 · 전해숙 · 김해영 · 제윤경 · 송옥주 · 김경협 · 송갑석 · 이용득 · 김병기 의원 발의)
- 9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신용현 · 권칠승 · 김현권 · 강훈식 · 이수혁 · 윤영일 · 전현희 · 노용래 · 이찬열 의원 발의)
- 9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 · 신용현 · 이찬열 · 김중로 · 최도자 · 채이배 · 김관영 · 이동섭 · 유의동 · 김중희 의원 발의)
- 9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노용래 · 손혜원 · 유은혜 · 송갑석 · 김병기 · 김철민 · 강창일 · 서삼석 · 고용진 의원 발의)
- 9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성일중 · 김규환 · 이명수 · 김성찬 · 윤한홍 · 박완수 · 김명연 · 민경욱 · 이용호 · 송희경 · 박명재 · 김도읍 의원 발의)
- 9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신용현 · 권칠승 · 김현권 · 강훈식 · 이수혁 · 윤영일 · 전현희 · 노용래 · 이찬열 의원 발의)
- 9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 · 김병기 · 노용래 · 손혜원 · 유은혜 · 송갑석 · 김철민 · 강창일 · 서삼석 · 고용진 의원 발의)
- 9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강훈식 · 김경협 · 김상희 · 김태년 · 김해영 · 박찬대 · 서형수 · 소병훈 · 송옥주 · 이수혁 · 이용득 의원 발의)
- 9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신용현 · 권칠승 · 김현권 · 강훈식 · 이수혁 · 윤영일 · 전현희 · 노



응래·이찬열 의원 발의)

9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전해철·김정우·김병기·손금주·서영교·박찬대·원혜영·정춘숙·고용진·박주민·우원식 의원 발의)
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상희·김성수·김영진·김종민·김태년·박광온·박재호·서형수·이수혁·진선미·최운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19)
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이채익·김상훈·김선동·조경태·박덕흠·박명재·송희경·정종섭·김광림·이종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49)
1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곽대훈·송언석·김선동·김광림·정갑윤·조경태·이종명·박명재·주호영·김정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84)
1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고용진·권미혁·김철민·박주민·송옥주·신창현·윤후덕·진선미·홍의락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89)
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33)
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이춘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59)
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찬열·이태규·정태욱·김관영·최도자·신용현·김수민·오신환·이언주·송석준·이정현·강효상·이철규 의원 발의)
1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박인숙·김명연·김현아·성일중·김태흠·이종배·함진규·원유철·정갑윤·정병국 의원 발의)
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신용현·권칠승·김현권·강훈식·이수혁·윤영일·전현희·노

응래·이찬열 의원 발의)

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김선동·박덕흠·김석기·추경호·김성원·심재철·송언석·김재원·정양석 의원 발의)
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홍문표·이양수·정태욱·홍일표·박맹우·이종배·정우택·유성엽·최교일·이채익·강석호·정유섭·이학재 의원 발의)
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중로·신용현·오세정·이찬열·김삼화·이동섭·최경환(평)·이언주·김종희 의원 발의)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권칠승·위성곤·신용현·김중로·김삼화·이동섭·김철민·김동철·하태경 의원 발의)
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김성찬·성일중·송언석·김진태·이은재·최교일·정갑윤·정용기·윤상직·강석진·박덕흠·김승희 의원 발의)
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김광림·김정재·박명재·김선동·이종배·김상훈·정갑윤·송언석·강석호·김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00)
1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김석기·박인숙·김정재·김광림·권성동·곽대훈·주호영·김선동·추경호·성일중·송희경 의원 발의)
1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김종희·황주홍·이찬열·유성엽·윤영일·김수민·박주현·조배숙·장병완·김광수 의원 발의)
1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원유철·김명연·김영우·권성동·곽대훈·金成泰·윤영석·이진복·정유섭 의원 발의)
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윤영일·김종희·정인화·이용주·김경진·조배숙·박지원·장정숙·최경환(평) 의원 발의)
11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신용현·이찬열·김수민·김중로·채이배·김관영·이동섭·최도자·김종회·박선숙 의원 발의)

**12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송갑석·김성수·박찬대·신경민·김경협·진선미·안호영·유동수·이수혁·윤후덕·이정미 의원 발의)

**1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황주홍·이용주·정인화·윤영일·김종회·장정숙·박주현·김경진·조배숙·박지원·유성엽·김광수·윤소하 의원 발의)

**1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종회·이찬열·위성곤·권칠승·조배숙·이학재·천정배·유성엽·윤영일 의원 발의)

**12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찬열·오세정·신용현·김중로·채이배·김관영·이동섭·이태규·박선숙 의원 발의)

**12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박광운·송갑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이춘석 의원 발의)

**1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최도자·이동섭·김수민·유성엽·위성곤·윤후덕·채이배·권칠승 의원 발의)

**1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찬열·오세정·신용현·채이배·이혜훈·김성식·김중로·정운천·주승용·김종회·이동섭 의원 발의)

**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김정재·정갑윤·장석춘·홍문중·문진국·정유섭·윤영일·김성원·김명연 의원 발의)

**1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장정숙·박주현·전혜숙·정인화·천정배·김광수·이정미·장병완·노웅래·신용현·황주홍·김종회·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77)

**1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박덕흠·원유철·이명수·최연혜·성일종·임이자·김석기·김경진·신보라 의원 발의)

**1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기동민·정춘숙·한정애·김태년·윤소하·전혜숙·김해영·제윤경·송옥주·김경협·송갑석·이용득·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627)

**1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기동민·정춘숙·한정애·김태년·윤소하·전혜숙·김해영·제윤경·송옥주·김경협·송갑석·이용득·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637)

**1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진표·이인영·박범계·한정애·강병원·김성수·신창현·이재정·이훈·정춘숙·제윤경 의원 발의)

**13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정갑윤·홍문표·송희경·이종명·박명재·김선동·윤종필·이양수·박덕흠 의원 발의)

**1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김경진·박선숙·김광수·윤일규·윤관석·전혜숙·유성엽·윤영일·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32)

**13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김병기·조승래·김민기·박찬대·서영교·안민석·정춘숙·홍익표·이규희·김영호·고용진·원혜영·인재근 의원 발의)

**1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김관영·정춘숙·홍의락·고

용진·김철민·조배숙·윤후덕·윤관석·이원욱·김경협 의원 발의)

- 1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훈 의원 대표발의)(김중훈·김해영·김종대·김수민·심상정·윤소하·이채익·이상현·추혜선·강길부·이정미 의원 발의)
- 13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훈식·권철승·김성수·김현권·남인순·박경미·유동수·전재수·제윤경 의원 발의)
- 13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동섭·김종희·윤소하·조배숙·박선숙·정성호·김종로·김삼화·김경진·천정배 의원 발의)
- 1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최도자·이동섭·김수민·유성엽·위성곤·윤후덕·채이배·권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53)
- 1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이동섭·권은희·이찬열·엄용수·이연주·김종로·홍철호·조정식·신상진 의원 발의)
- 1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송갑석·김성수·고용진·박찬대·김병기·신경민·김경협·진선미·안호영·유동수·이수혁·유승희·윤후덕·이정미 의원 발의)
- 1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최도자·이동섭·김수민·유성엽·위성곤·윤후덕·권철승·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02)
- 1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권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이춘석 의원 발의)
- 1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문진국·정양석·이철규·송기현·박덕흠·황영철·위성곤·전재수·주호영·경대수 의원 발의)
- 1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홍일표·윤영석·유재중·곽대훈·김석기·이채익·권성동·함진규·추경호 의원 발의)
- 1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

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추혜선·심상정·윤소하·송옥주·박주현·민홍철·김중훈·박찬대 의원 발의)

- 14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유성엽·주승용·박주현·이찬열·김수민·김광수·장정숙·박주민·김종희 의원 발의)
- 14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박명재·민경욱·박완수·곽대훈·임이자·이은권·정갑윤·김석기·박대출·곽상도 의원 발의)
- 1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황주홍·윤영일·신용현·김광수·장정숙·이정미·김상희·손금주·천정배·박주민·장병완·김경진 의원 발의)
- 1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위성곤·이찬열·권철승·이학재·조배숙·천정배·윤영일·김종희·유성엽 의원 발의)
- 1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민병두·전혜숙·이춘석·백혜련·박광온·김상희·김정우·이철희·박선숙 의원 발의)
- 1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정춘숙·송기현·최인호·박정·권철승·전재수·우원식·김해영·유동수·황희·유은혜·위성곤·강병원·김병관 의원 발의)
- 1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강창일·고용진·금태섭·김병기·김성수·김정우·남인순·박주민·박찬대·서영교·송옥주·이후삼·추미애·윤관석 의원 발의)
- 15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추경호·박덕흠·경대수·김광림·김태흠·박명재·조경태·이현재·강길부·강석진 의원 발의)
- 156.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신보라·박인숙·김무성·이은권·성일중·김태흠·추경호·박순자·민경욱·강석진·김정재·김광림·정갑윤·김승희·김성원·김세연·임이자·원유철·문진국·김석기 의원 발의)

- 1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신용현 · 권칠승 · 김현권 · 강훈식 · 이수혁 · 윤영일 · 전현희 · 노웅래 · 이찬열 의원 발의)
- 15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 · 주광덕 · 임이자 · 윤한홍 · 장석춘 · 민경욱 · 이동섭 · 김현아 · 조원진 · 신보라 의원 발의)
- 15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 · 이학영 · 김해영 · 박재호 · 안호영 · 전재수 · 윤준호 · 박광운 · 권칠승 · 백혜련 · 김상희 · 우원식 의원 발의)
- 16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신용현 · 권칠승 · 김현권 · 강훈식 · 이수혁 · 윤영일 · 전현희 · 노웅래 · 이찬열 의원 발의)
- 16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 · 박주선 · 정성호 · 김광수 · 이연주 · 신용현 · 오신환 · 김수민 · 채이배 · 최도자 의원 발의)
- 16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정인화 · 천정배 · 이용호 · 박주현 · 장정숙 · 유성엽 · 성일종 · 조배숙 · 손금주 · 김광수 · 김중로 의원 발의)
- 16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김병기 · 김영호 · 김종민 · 김철민 · 노웅래 · 이규희 · 이재정 · 윤준호 · 송옥주 · 조승래 의원 발의)
- 16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송희경 · 조훈현 · 장석춘 · 김학용 · 박명재 · 백승주 · 김성원 · 민경욱 · 주광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48)
- 16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 · 송희경 · 조훈현 · 장석춘 · 김학용 · 박명재 · 백승주 · 김성원 · 민경욱 · 주광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66)
- 16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 · 이채익 · 김진태 · 윤종필 · 임이자 · 강석호 · 이학재 · 송희경 · 김정재 · 정병국 · 조훈현 · 김성찬 · 박명재 의원 발의)
- 16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 · 유성엽 · 김중

- 회 · 천정배 · 조배숙 · 이찬열 · 최경환(평) · 장정숙 · 황주홍 · 이용주 의원 발의)
- 16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 · 이수혁 · 박정 · 안호영 · 문희상 · 김병기 · 이찬열 · 표창원 · 김경협 · 이인영 의원 발의)
- 16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 · 박덕흠 · 김석기 · 곽대훈 · 원유철 · 이종배 · 송언석 · 박인숙 · 김상훈 · 최연혜 의원 발의)
- 17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 · 이채익 · 곽대훈 · 김상훈 · 김광림 · 박명재 · 김선동 · 강석호 · 조경태 · 엄용수 · 박성중 의원 발의)
- 17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 · 박맹우 · 윤한홍 · 백재현 · 정유섭 · 이종배 · 심재철 · 강효상 · 곽대훈 · 김규환 · 김기선 · 안상수 · 김학용 의원 발의)
- 17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김영호 · 유기준 · 박명재 · 강석호 · 민경욱 · 성일종 · 김승희 · 김순례 · 유재중 의원 발의)
- 17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 이정현 · 이태규 · 정태욱 · 김관영 · 최도자 · 신용현 · 김수민 · 오신환 · 오세정 · 이찬열 · 이연주 · 송석준 · 강효상 · 이철규 의원 발의)
- 17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 · 추경호 · 박덕흠 · 경대수 · 김광림 · 김태흠 · 박명재 · 조경태 · 이현재 · 강길부 · 강석진 의원 발의)
- 17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 · 김성원 · 김무성 · 정태욱 · 성일종 · 경대수 · 이은재 · 홍문표 · 김용태 · 이현재 · 정용기 의원 발의)
- 17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 · 김광림 · 김선동 · 김순례 · 박성중 · 송희경 · 유재중 · 윤한홍 · 이종구 · 이종배 · 정유섭 의원 발의)
- 17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이연주 · 정병국 · 하태경 · 김중로 · 김관영 · 이동섭 · 김삼화 · 김수민 · 이찬열 · 김종석 · 정유섭 · 강효상 · 윤상직 · 추경호 의원 발의)

17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박인숙·김학용·김승희·엄용수·최교일·김성원·유재중·이군현·이진복·윤영석 의원 발의)
17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송희경·함진규·이채익·박인숙·정유섭·김성태·김현아·김도읍·박덕흠·이종명·이은권 의원 발의)
18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이종배·주광덕·김진태·이현재·원유철·김기선·김태흠·정우택·윤영석·이현승 의원 발의)
18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원유철·윤종필·장석춘·주광덕·정태옥·문진국·성일종·김성찬·김승희 의원 발의)
18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박영선·조배숙·김광수·문진국·유성엽·최경환(평)·정인화·이혜훈·이종구 의원 발의)
18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관영·채이배·이태규·최도자·김동철·이언주·주승용·신용현·박주선·이동섭·이학재·이찬열·김삼화·김성식 의원 발의)
18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주광덕·경대수·박성중·김석기·이종명·이명수·박덕흠·최연혜·김태흠 의원 발의)
18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이언주·추경호·정유섭·김종석·박대출·윤한홍·김규환·권성동·정종섭 의원 발의)
18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김석기·박인숙·김정재·김광립·권성동·곽대훈·주호영·김선동·추경호·성일종 의원 발의)
18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희 의원 대표발의)(김종희·윤영일·정인화·유성엽·김광수·김수민·조배숙·박지원·이찬열·황주홍 의원 발의)
18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곽대훈·정유섭·김재원·정갑윤·박덕흠·정태옥·권성동·이채익·성일종·주광덕 의원 발의)

18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은 의원 대표발의)(박광은·김해영·김현권·백혜련·김영진·이춘석·안민석·전현희·권칠승·이학영 의원 발의)

190.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은 의원 대표발의)(박광은·김해영·김현권·백혜련·김영진·이춘석·안민석·전현희·권칠승·이학영 의원 발의)

191. **동일임금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신용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

19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17시41분)

○위원장 김학용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92항까지 법률안, 청원 및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김승희 의원님께서 직접 오셨네요.

저희 위원회는 직접 오시면 특별히 법안을 신경 쓰는 전통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및 제7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번호 20158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안건번호 201582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건번호 20158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간접영향권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폐기물소각시설 등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영향권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소각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의 지역에까지 전파되며 환경상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간접영향권의 범위가 협소한 탓에 경계선 300m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폐기물소각시설 등으로부터 각종 유·무형의 피해를 입어도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환경상의 영향과 유·무형의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설정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원협의체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이를 관할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전번호 201582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지침에 의거하여 일반적인 쓰레기소각장 등 폐기물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을 15년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에도 약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적 보수를 통해서 가동된 지 20년이 지나도 계속 운영되는 폐기물소각시설들이 존재합니다.

일례로 양천구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의 경우에는 지난 1986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32년째 운영 중이며 이에 양천구 주민들이 감내해야만 하는 각종 유·무형의 피해 역시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양천구는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으로 쓰레기소각장 인근에 다수의 아파트 단지 와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계층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거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전국

에서 양천구와 같은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양천구의 사례처럼 기피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소각시설이 특정지역 한곳에서 지나치게 오래 운영되며 지역주민들에게 기약 없는 인내와 희생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30년이 지난 폐기물소각시설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디 2건의 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법률에 그 시행근거만 명시된 현행 기상산업실태조사 관련 조항에 조사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불명확한 행정조사 규정에 의한 조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실태조사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은 그간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85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2항까지의 법률안과 일사일정 제192항 의견 제시의 건 중 환경부 소관 부분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주아**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80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쟁점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충전인프라에 대한 정보가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설치·운영 중인 충전시설 관련 정보를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대체로 현행 제도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다른 기관의 충전기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경우 누락 없이 국내 모든 충전인프라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쪽 하단입니다.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역별 수질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한 취지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보조율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 중간입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절수설비에 등급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절수효과를 위해 물 배출량 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송용 의원안과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 하단입니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영향개발을 통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저영향개

발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개발로 인해 변화하는 물순환 특성을 개발 전의 상태와 최대한 유사하도록 복원·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나 도시, 기관, 적용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개별법 특성에 맞게 저영향개발의 취지를 담아내는 것이 적절할지, 제정안과 같이 제정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쪽 하단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회법 제8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이양일괄법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국가사무 이양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기관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이를 자치사무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경우 국회 국정감사나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게 되는 등 실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금년 상반기 중 폐비닐 대란에서도 이미 한 차례 겪은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사안에 있어서는 환경 관련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바 동 법률안은 이러한 논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3항부터 제191항까지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 및 제192항 의견 제시의 건 중 고용노동부 소관 부분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3항부터 제192항까지 110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청원 및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쟁점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부터 제86항까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서 이장우 의원안은 건설근로자의 경우 납부월수

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 이르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쪽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한정에 의원안은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에게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김동철 의원안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형은 삭제하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법정 근로시간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범처리가 되는 건수는 많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재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송옥주 의원안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인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시설의 설치를 삭제하고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설비의 사업장 내 설치와 그 장소·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의 안전관리 및 재산보호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삭제하고 개정안의 내용인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관련 사항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한정에 의원안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자료 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자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자료 확보가 가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문진국 의원안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의 강사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평가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쪽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김학용 의원안, 강효상 의원안, 신보라 의원안은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하여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 등 추가, 업종별·지역별·연령별 차등적용, 외국인 별도적용, 결정주기 격년으로 변경,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및 구성방법 변경 등 다각적인 제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둘러싼 각계각층의 입장과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연혁 그리고 주요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안은 최저임금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전년도의 업종별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정을 삭제하려는 법안과 연계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상돈 의원안은 국회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하려는 것으로 국회가 법률 개정이 아니라 법률 집행을 위한 개별적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중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가운데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업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설립허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업무 등을 시도로 이양하려는 것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훈련법인의 설립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입니다.

이재갑 장관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상당수 의원님들께서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19년도 인상분의 적용을 유보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본 적은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최저임금이 시행되는 것이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 달 반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시행시기를 연기한다는 것이 우선 내년 예산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아마 기업체에서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분들도 한 300만에서 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기대하는 수준도 있어서 만약에 지금 연기를 하게 되면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반대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의원님들이 이런 주장과 법안을 내시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그런 근거 있는 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제가 잘못되는 게, 뭐를 지고 불로 뛰어드는 이런 것을 정책 당국자들이나 의원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 것도, 저는 이것도 정말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를 통해서도 2019년은 소급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하니까 2020년에는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동결하는 수준으로 가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최저임금은 그 시점의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을 반영하면서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2020년의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라고 결정하기에는 좀 성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지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오늘 통계청 발표 보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봤습니다.

○**강효상 위원** 지금 소득격차가 지난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지금 상위 20%는 8.8% 올라가고 물론 약간 둔화는 됐습니다만 하위 20%는 또 7% 감소해서 빈부격차가 더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고용도 악화되고.

장관님, 지난 10월 중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전년 대비 4000명 줄어든 것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알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이 지표야말로 정부가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던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1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에서 일자리의 양·질이 모두 악화된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변하지 마시고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의 정말 충정어린 2020년 최저임금 동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고가 됐습니다만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 지역별 또 업종별 또 연한별 등 이런 차등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가 정말 간곡히 촉구를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선 저희 정부도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 고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한 개선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 심사 시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도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합리적인 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지난 10월 26일 날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제가 장관님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실태조사를 완료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그때 당시 장관님께서 1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11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실태조사는 저희가

FGI 형태로 해서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하는 형태로 해서 최저임금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저희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을 한 달에 하나씩 선정해서 앞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이요 일차적인 업종은 11월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이 12월 한 달 동안 해서 12월 말이 되면 또 다른 업종의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강효상 위원 그러면 매달 그렇게 나오면 종합적인 결론은 언제 내실 계획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업종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실태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효상 위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증거가 지금 최저임금 미만율의 경우에 4인 이하 영업장의 31.8%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강효상 위원 특히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이런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또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할 시에는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번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를 하시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등을 포함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구조 같은 걸 정비하고 그리고 최저임금 심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나 결정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면 내년도에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최저임금이 심의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환경부장관님과 그리고 기상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지난 10월 26일, 28일 날 인공강우를 백두산 일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상청장 김종석 예.

○전현희 위원 지금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및 황사대책의 일환으로 티베트에 수만 개의 인공강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한반도 8배 규모의 인공강우단지입니다. 약 100억㎡, 중국 물 소비량의 약 7%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을 인공강우를 통해서 중국이 조달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인공강우 작업을 할 경우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가뭄이나 폭염이나 여러 가지 이상기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기상청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중국의 대규모 인공강우 작업이 우리나라의 강수량을 줄이거나 이상기후를 유발시킬 가능성은 낮고 또 대책이 없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8배 규모의 인공강우 단지를 만들 때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될지 이것은 사실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편서풍 영향으로 대부분의 기단이 서쪽에서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기상청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인공강우를 실시할 경우에 상당 양의 비구름이 중국으로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급감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공강우의 응결핵으로 인해서 이계 비가 안 되고 그게 일종의 미세먼지로 와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건설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중국이 착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인공강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피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에 그런 자료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제적으로 동조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인접 국가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티베트에 이런 인공강우단지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주변 국가의 기후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상청과 환경부에서 좀 면밀히 주시를 하고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제적 동조를 포함한 중국에 대한 외교적 협력 그리고

기상청의 인공강우에 대한 협력 그리고 또 대책 이런 걸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주도적으로 대응책 좀 마련해서 본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장, 문진국 위원과 사회교대)

○**기상청장 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중환경협력센터에 37개의 협력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27개는 이미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한중간에 인공강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인공강우를 통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아마 중국 정부와 부분적으로 협의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 같은 그런 민간기구도 만들어지고 해서 그런 기구를 통해서 인공강우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긴밀한 정보의 교환이라든가 정책의 공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영향을 좀, 완전히 예측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영향이 심각하게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피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늠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우려와 필요하다면 반대 의사 표명 이런 것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장 김종석**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현재 격년제로 한중기상협력회의를 황사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관하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한반도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진국**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환경부장관께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주요 산하기관의 기관장 교체설이 계속 있는데, 물론 정권교체가 됐고 그리고 문책

당할 사유가 있으면 기관장 교체는 바람직하고 그것은 임명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이런 인사가 있었는데, 바깥에 별로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한 소식이 있어요. 대개 짐작하실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임 김은경 장관이 장관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비서관을 지명했는데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당한 공무원을 갖다가 임명했어요. 그것을 환경부 실국장이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밖에서 다 알고서 완전히 그냥 웃었다고, 그것을 갖다가. 국회에서 제가 얘기해서 비서관 교체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징계당했던 공무원과 같이 골프를 쳤던 산하기관 어떤 직원이, 지금 계속 있는데 산하기관 개방직 직위의 물망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 굉장히 이게 평가가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이. 나는 인사에 있어서 구태여 비리로 징계당했던 사람이, 비서관도 안 되면 같은 경우에 있던 사람 갖다가 개방직 직위에 임명한다는 것은 상식에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 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인사를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인사가 있게 되면 이 정부 자체가 아주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국감 끝나고 나서, 저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이 20년 전부터 굉장히 방향을 잘못 갔다고 보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소각 정책을 주민들 반대 때문에 너무 일찍이 접어 버렸고, 재활용 위주로 정책을 한 것은 좋은데 사실 이게 재활용이 말만 재활용이지 잘 안 됐잖아요. 특히 음식물쓰레기 갖다가 재활용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음폐수 그것을 바다에다 버렸고, 그러고 나서 요새는 개한테 먹이고 돼지한테 먹이고…… 이게 도대체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거고.

또 하나는 쓰레기종량제, 쓰레기를 줄인다는 그 취지도 좋고 쓰레기 그냥 방치하는 것 이런 것을 억제하는 부분은 좋지만 많은 집에서 그냥 쓰레기봉투값 줄이기 위해서 그 오염된 온갖 잡다한 플라스틱, 비닐 다 재활용 분류하니까 다 엉켜 가지고 페트니 뭐니 재활용이 잘 될 수 있

는 것까지 섞여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생산업에 쓸 수 있는 고급 폐플라스틱은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국감 끝난 다음에 11월 13일 자 문화일보에 이런 기사 나온 것, 제가 실무진 물어보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다 반박을 못 해요. 다 옳다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그러면,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입 규제를 강화하자 갈 곳을 잃은 외국산 폐플라스틱이 우리나라에 무서운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 이것은 너무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백번 양보해서 우리나라가 수입을 규제해서 이게 다른 나라 갔다고 그러면 그나마 좀 낫듯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이 기사가 이게 다 맞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산 폐플라스틱을 우리가 엄청나게 수입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미국에서는 플라스틱을 페트 등등 좀 자질이 되는 것, 그것을 갖다가 확실히 분리하는데 우리는 그냥 온갖 오염된 것을 뭉뚱그려서 집에서 버려서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문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우리 환노위 위원들이 모처럼 다 많은 시설을 봤는데 소위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우리 폐기물 정책이 안 맞는다고, 우리가. 저는 20년 전부터 이것 분명히 사고 난다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까지 와서…… 이것 보세요. ‘폐플라스틱 수입 쓰나미, 제2의 재활용 대란 오나’ 이게 어떻게 21세기, 이천십몇 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장관이나 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금방 답할 성질은 이것은 못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지난번에 가서 소각 정책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농가의 축산분뇨 같은 거 또 가스화 시설은 다 보고 와서 상당히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각과 가스화 같은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국감 지났지만 이게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수입을 규제해서 그 쓰레기가 한국

에 온다는 것은 참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진국 대답하시고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우선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고위공직자 자리가 한 5개가 비어 있는데 12월 초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자리에 배치하도록 하고요. 특히 비위와 관련된 그런 인사들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하단체 7개 기관에서는 14개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지금 9개가 공로 절차를 거치고 있고 나머지는 인사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 자리가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해서는 2주 전에 위원님들께서 일본 다녀오시면서 제출하신 그 보고서를 보고 저도 많은 감명을 받고 또 많은 상상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을 좀 선진형으로 바꾸는 이런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선진형 폐기물 정책을 우리나라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진국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보라 위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입법 차원에서 탄력근로제 관련한 여러 법안들도 지금 우리 소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진국 위원,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1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일각의 보도도 있던데 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의 고려사항에서 1년 단위는 아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저희의 기본 입장은 탄력근로시간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안을 도출한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돼서 논의가 빨리 시작되면 거기에서 노사 합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경사노위에 논의를 맡기겠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기본 입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탄력근로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든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이라든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탄력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봄에 있었던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산업현장에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리고 경사노위에서 이것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며칠 전에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총파업에 대해서 문성현 위원장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내용, 혹시 기사로 확인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기사에서는 봤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민주노총 총파업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총파업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 발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굉장히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오늘 경사노위 출범할 때 문성현 위원장에게 그 발언의 진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었는데요. 원래 자신이 얘기한 것은 ‘비정규직은 총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정규직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 기사에서 뒷부분은 빼고 앞부분만 기사화한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신보라 위원** 실제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총파업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한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원래 발언한 내용은 절대 그 내용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산하기관장들이, 특히 김동만 산업인력공단이사장도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해서 또 물의를 빚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정부가 노동계에 휘둘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문성현 위

원장도 그런 발언을 하시니까 자꾸 노동계에 휘둘리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김동만 이사장이 거기 참여한 것은 그날 저도 조간신문 보고 확인을 했고요. 확인하자마자 김동만 이사장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그리고 본인도 그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탄력근로제를 어쨌든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문성현 위원장께서 노총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오해를 사는 발언을 하셨고요. 어쨌든 그런 편향적인 결론이 나지 않도록, 노사가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경사노위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현재 불완전한 출범을 했는데 원래는 의제별·업종별 그다음에 계층별 위원회를 다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만 지금 출범을 한 상태로 계층별 위원회는 아직도 구성이 안 됐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지금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사노위 출범을 해서 그간의 준비 과정이 꽤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층별 위원회가 아직도 안 만들어진 것은 좀 저는 소극성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층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구성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제가 본위원회랑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의 구성된 위원들의 내용 중 청년 몫의 위원들을 살펴봤는데 두 단체가 사실상 독식을 하고 있어요, 특정 두 단체가. 그런데 그 특정 두 단체가, 저는 청년 대표성이 그 두 단체에만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 정부에서도 실은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서 다양한 단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두 단체에게, 유일하게 본위원회하고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한네다섯 명의 위원들이, 두 단체만 독식하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시정하기가 힘들다면 적어도 계층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청년, 비정규직, 여성 이렇게 계층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의 계층별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균형감과 다양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들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장관님도 참고하셔서 경사노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사노위 측에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계층별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 위원 대표를 아마 법령에 근거 규정을 가지고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보라 위원** 법령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누구의 추천을 받는다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내용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계층별 위원회는 노사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노사 추천 인원에 대해서 지금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하시는 것은 하시고 지금 의결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대체토론이 진행 중입니다만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안건을 소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82항까지 안건과 제192항 중 환경부 소관 부분은 환경소위에, 의사일정 제83항부터 제191항까지 안건과 제192항 중 고용노동부 소관 부분은 고용노동소위에 각각 회부하

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체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님,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정말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요, 국민들은 정말 경제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작금의 이 경제위기는 정책에 의한, 잘못된 정책에 의한 인재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물론 ILO에서 제안했습니다만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성공하지 않은 정말 이런 이류, 삼류 정책을 들고 나와서 지금 대한민국 온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모르모트로 해서 1년 반 동안 온갖 정말 터무니없는 실험들을 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저는, 이 소득주도성장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왜 경질했다고 보세요? 잘했으면 경질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잘랐으면 정책도 잘라야 됩니다. 지금 이 최저임금 문제의 주무부서,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핵심 부서가 바로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선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소득주도 성장에 많은 정책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핵심 부서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을 회피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되고, 대통령을 보면 ‘사람을 경질했듯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 폐기하십시오’라고 정말 장관직을 걸고, 목을 걸고 저는 건의하시기를 감히 제가 충언을 드립니다.

그러실 생각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고용상황과 관련해서는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저는 다시 한번 정말 실기를 하

면, 더 이상 실기를 하면 안 된다, 정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제가 촉구를 합니다.

환경부장관님, 지난 15일 날 파이낸셜타임스지에 필리핀에 우리나라 쓰레기가 불법으로 수출돼서 필리핀 국민들이 상당히 시위를 하고 그랬다는 보도 보셨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강효상 위원** 그래서 환경부가 당연히 이것은 현장조사,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태조사해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저희 부에서는 지금 허위 수출신고에 대한 수사를 착수 의뢰했구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 반입조치를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우리 필리핀 수입업체가 제대로 허가를 받은 곳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그 내용물도 터무니없이, 신고된 내용과 다른,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다 이렇게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전부 폐기물 쓰레기였습니다. 전구, 전자제품, 일회용 기저귀, 배터리 이런 건데요. 정말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잘살게 됐다고 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모욕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돈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 있는데, 중국이 이런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는 데는 그만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 수준이 높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제3국에 불법 폐기물 수출을 자행한다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망신이고 정말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고요. 정말 필리핀 국민들에게 낯을 들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수출업체에 대해서 어떤 업체들인지,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 관계부처와 공조해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관세법을 적용해서 불법적으로 송출된 폐기물을 다시 반입시켜서 그에 적합한 여러 가지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강효상 위원** 다시 회수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아마 국내의 적정한 소각

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효상 위원** 관련자들을 엄벌하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외신에 나라 망신하는 이런 사례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장관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환경부장관님, 지금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가 하면 이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저수지로 가고 수상 태양광으로 가서 수상 태양광으로 온 하천을 뒤덮고 해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데, 대통령께서 새만금 태양광 조성계획 발표했을 때 환경부하고 뭐 협의된 거 있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없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없었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지금 100만kW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서는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 인터뷰를 봤는데, 그렇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환경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성평가 협의 실무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주변 경관 영향이라든가 수질 영향 그다음에 시설의 안전성 그다음에 주민의 수용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저도 오늘 언론 매체를 보고 알았는데요. 미국 코넬대와 일본 도쿄대에서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영국왕립협회 학술지에 따르면 수중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줄어들게 되면 수초가 타격을 입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초가 감소하고 이러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해서 녹조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던데, 그렇다고 한다면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으로

다 덮였을 경우에 녹조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제가 몸담았던 KEI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는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해서 수질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례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인과 관계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새만금 태양광 조성계획 관련돼 가지고는 전북도민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정당들도 다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녹조 관련돼 가지고도 새롭게 이 부분들이 보고된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류의 배설물 관련돼서 조류가 배설물을 했을 경우에는 청소를 하려고 하면 결국 또 유독성 있는 세정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수질오염을 시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임이자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유해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마어마한 단지다 보니까. 또 이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도 들끓고 있고 하니까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잘해 주실 수 있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학 세정제를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물론 그런데요. 하다 보면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씻겨 내려가지지가 않아요, 요새 조류 배설물들도 독해 가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일반 저수지에 다 이렇게 몇 개 몇 개 해 놓은 이런 부분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새만금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 해서 그것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전에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를 꼼꼼히 챙겨 보시란 말입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유념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강효상 위원님께서 필리핀 쓰레기 밀 수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 먹고 잘살았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필리핀이 장충체육관 지어 주고 저희가 필리핀 미작연구소 가서 쌀 증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오고 그러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다가 대한민국의 쓰레기를 수출해서 대한민국에 먹칠을 하는 이런 악덕 기업은 반드시 발본색원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브로커들이 정말 먹튀 하는 용으로 태양광이 쓰인다는 등 아니면 특정한 배블러 준다는 등 각종 풍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선제적으로 잘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야말로 태양광 게이트가 터질지,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태양광으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법안 심사를 위해서 한정에 환경소위원장님 그리고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님 또 소위원장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예산심의로 인해서 우리 국회가 본의 아니게 과행을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낭비하고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고 압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강효상 김동철 김학용 문진국  
 설훈 송옥주 신보라 이상돈  
 이용득 이장우 임이자 전현희  
 한정애

○청가 위원(2인)

신창현 이정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김승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전문위원 송주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관 조명래  
 차관 박천규  
 기획조정실장 박광석  
 생활환경정책실장 유제철  
 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수자원정책국장 박하준  
 자연보전정책관 정종선  
 자원순환정책관 신선경  
 대기환경정책관 황석태  
 환경보건정책관 하미나  
 정책기획관 주대영  
 기상청  
 청장 김종석  
 차장 최흥진  
 기획조정관 신도식  
 기후과학국장 김세원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김금란  
 지진화산국장 이미선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차관 임서정  
 기획조정실장 박화진  
 노동정책실장 안경덕  
 노동시장정책관 박성희  
 고용서비스정책관 김영중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덕호  
 고령사회인력정책관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 장신철  
 노사협력정책관 김민석  
 근로기준정책관 김경선

공공노사정책관 류경희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정책기획관 선우정택  
 국제협력관 김대환

【보고사항】

○의안 회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1. 9. 정부 제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8. 11. 9. 김성태·강석진·강석호·강효상·  
 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성동·김광립·  
 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  
 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  
 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  
 김용태·김재경·김재원·김정재·김정훈·  
 김종석·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  
 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  
 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  
 박완수·박인숙·백승주·성일종·송석준·  
 송언석·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  
 안상수·엄용수·여상규·염동열·원유철·  
 유기준·유민봉·유재중·윤상직·윤상현·  
 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군현·  
 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은권·  
 이은재·이장우·이종구·이종명·이종배·  
 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규·이현승·  
 이현재·임이자·장석춘·장제원·전희경·  
 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유섭·  
 정중섭·정진석·조경태·조훈현·주광덕·  
 주호영·최교일·최연혜·추경호·한선교·  
 함진규·홍문중·홍문표·홍일표·홍철호·  
 황영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회부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2018. 11. 12. 김관영·최도자·김중로·하태경·  
 김수민·김동철·이동섭·오신환·박주선·  
 이태규·정운천 의원 발의)

11월 13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8. 11. 13. 이찬열·황주홍·김종희·전혜숙·  
 안규백·김병욱·김수민·김삼화·이동섭·  
 주승용·안민석·전재수 의원 발의)

11월 14일 회부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4. 이정미 · 김종대 · 심상정 · 윤소하 · 추혜선 · 표창원 · 이용득 · 이상돈 · 송옥주 · 박홍근 의원 발의)

11월 15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 발의)**

(2018. 11. 16. 이진복 · 김광립 · 김영우 · 이채익 · 안상수 · 유민봉 · 홍문표 · 송언석 · 윤재옥 · 정우택 · 김세연 · 김무성 · 이현승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 발의)**

(2018. 11. 16. 권은희 · 김삼화 · 김수민 · 이동섭 · 주승용 · 김관영 · 채이배 · 하태경 · 김동철 · 신용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9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8. 11. 19. 신보라 · 함진규 · 추경호 · 문진국 · 홍문표 · 임이자 · 하태경 · 박명재 · 이종명 · 이철규 의원 발의)

11월 2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2018. 11. 9. 박덕흠 · 윤종필 · 원유철 · 황영철 · 엄용수 · 박맹우 · 김기선 · 추경호 · 김승희 · 성일중 의원 발의)

1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018. 11. 13. 정부 제출)

1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2018. 11. 14. 심상정 · 김종훈 · 윤소하 · 김종대 · 채이배 · 원혜영 · 서영교 · 추혜선 · 정동영 · 이찬열 · 유승희 · 이정미 · 이철희 · 표창원 의원 발의)

11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6. 정우택 · 최연혜 · 권성동 · 김정재 · 조훈현 · 김한표 · 윤종필 · 강길부 · 이진복 · 광대훈 · 원유철 · 金成泰 · 박맹우 의원 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김병욱 · 윤후덕 · 전재수 · 어기구 · 김해영 · 이종걸 · 강병원 · 최운열 · 민병두 · 이찬열 · 안호영 · 고용진 · 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 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